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효율적인 전파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무선국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범위 및 적합성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개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선국 정기검사 연기 근거 마련(안 제45조제1항 단서 신설)

재난이 발생하여 법령에서 정한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 범위의 합리적 조정(안 제66조제1항제1호 본문, 별표 6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무선국 시설자가 안테나공급전력이나 이득의 감소 등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변경을 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일반인의 도보 통행이 제한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 등은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적합성평가 면제 범위 확대(안 별표 6의2 제1호자목, 안 별표 6의2 제1호차목 신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한 방송통신기가재 등을 반입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판매하는 경우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방송통신기가재 등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하도록 함.

라.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개선(안 별표 8 제1호, 안 별표 8 제4호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 무선설비를 공동사용하게 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명령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행을 전파사용료 감면제도와 연계되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

마. 검사수수료 인하(안 별표 13 제1호)

5세대 이동통신 구축으로 인한 무선국 설치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수수료를 인하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19. ~ 12. 9., 12. 17. ~ 12. 20.) 결

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다만, 해당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3조의2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6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수료: 2022년 1월 1일

별표 6 제1호의 안테나공급전력 기준란 중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를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송신장치와 안테나가 모두 옥내에 설치되고, 안테나공급전력이 다수 안테나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안테나공급전력을 말한다)이”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설치장소 기준란 단서 중 “양각”을 “상향각”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군용전기통신법」 등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설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2. 보행로가 없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에 설치되어 일반인의 도보 통행이 제한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6의2 제1호자목 중 “판매”를 “반입일부터 1년 이내의 판매”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	--

별표 8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자별 전파사용료=(가입자수×단가)×감면계수[1-((공용화감면계수+환경친화감면계수)×공용·환경친화명령이행률+로밍감면계수+이용효율감면계수)]×전파특성계수

4의2. 공용·환경친화명령이행률: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으로서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직전년도 공용·환경친화명령 이행 대상 무선국 중 이행이 완료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

별표 1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본문 및 단서 중 “3만5천원”을 각각 “2만원”으로 한다.

1.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100W 미만	10만원	8만3천원	8만3천원	8만3천원
	100W 이상	11만6천원	8만5천원	8만5천원	8만5천원

부 칙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제45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 ----- ----- ----- ----- ----- -----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 ----- ----- ----- ----- -- . ----- ----- -----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다.

2. (생략)

② ~ ⑤ (생략)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1. -----

----- 해당한다. 다만, 해당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u><신 설></u> 2.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96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수료: 2022년 1월 1일</u> 2.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연 락 처	(044) 202 - 4955